



제336회 제2차 정례회
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2. 12. 12(월)

경 상 북 도 1 인 가 구 지 원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144
제안일자	2022. 11. 17.
회부일자	2022. 11. 23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 실

경 상 북 도 1 인 가 구 지 원 조 례 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김희수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저출산·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여 경상북도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6%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지원이 미비함.
-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1인가구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1인가구 지원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4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2.11.23. ~ 11.28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15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☐ 제정취지와 필요성

-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구형태가 나타나고 있음.
특히 경제활동, 이혼, 비혼, 저출산,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2020년 기준 전국 31.7% (6,643,354가구)가 1인가구로 나타났고, 경북의 경우 1인가구가 34.4%(388,791가구)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.
- 경북의 1인가구 특성을 보면, 남자 48.4%, 여자 51.6%이며, 이들 중 50대 이상이 59.8%로 나타나 중년 이후 노년에 이르는 시기에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(붙임자료 참조).
- 그러나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지원 대책은 전무한 수준에 있음.
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.

□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.
 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목적, 정의,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,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, 지원사업, 홍보, 포상을 규정하고,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1인가구, 사회적 가족도시, 공유주방, 공유주택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「건강가정기본법」과 다른 시도 조례 및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규정한 것임.
- 안 제3조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은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, 이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1) 및 제15조2)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·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, 건강

-
- 1)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2) 제15조(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 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~ 9. (생략)
10.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

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1인가구에 대한 복지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,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.

- 이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, 1인가구 또한 가족 또는 가정의 한 형태로서 1인가구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을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기간과 같은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추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안 제5조는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
- 이는 5년 단위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시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급속한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6조는 도지사가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의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와는 별도로

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1인가구 지원사업을 규정함. 이는 1인가구 실태조사와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8조는 도지사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, 안 제9조는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.
 - 이는 1인가구의 특성상 각종 정보 획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, SNS 등을 활용한 정책 홍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, 1인가구 지원 사업의 확산을 위한 포상규정으로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, 13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 또한,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시행 및 여건 조성에 1인가구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경상북도의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.
- 특히, 경상북도는 50대이상의 1인가구가 59.8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이후 노년에 이르는 시기에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점을

감안해 볼 때,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을
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붙임1

1인가구 전국 현황(2020년)

(통계청, 20년말 기준)

구분	전체가구	1인가구						
		계			남		여	
		가구수	비율	순위	가구수	비율	가구수	비율
전국	20,926,710	6,643,354	31.7%		3,304,398	49.7%	3,338,956	50.3%
서울	3,982,290	1,390,701	34.9%	3	650,999	46.8%	739,702	53.2%
부산	1,405,037	455,207	32.4%	9	206,311	45.3%	248,896	54.7%
대구	985,816	304,543	30.9%	14	140,952	46.3%	163,591	53.7%
인천	1,147,200	324,841	28.3%	15	168,675	51.9%	156,166	48.1%
광주	599,217	193,948	32.4%	10	96,817	49.9%	97,131	50.1%
대전	631,208	228,842	36.3%	1	116,257	50.8%	112,585	49.2%
울산	444,087	122,848	27.7%	16	68,070	55.4%	54,778	44.6%
세종	139,106	43,577	31.3%	11	22,724	52.1%	20,853	47.9%
경기	5,098,431	1,406,010	27.6%	17	758,076	53.9%	647,934	46.1%
강원	661,039	231,371	35.0%	2	115,678	50.0%	115,693	50.0%
충북	678,922	236,208	34.8%	4	122,465	51.8%	113,743	48.2%
충남	892,222	304,973	34.2%	6	159,737	52.4%	145,236	47.6%
전북	755,575	255,269	33.8%	7	121,764	47.7%	133,505	52.3%
전남	761,518	256,633	33.7%	8	120,032	46.8%	136,601	53.2%
경북	1,131,819	388,791	34.4%	5	188,127	48.4%	200,664	51.6%
경남	1,350,155	417,737	30.9%	13	206,071	49.3%	211,666	50.7%
제주	263,068	81,855	31.1%	12	41,643	50.9%	40,212	49.1%

※ 통계청(2020), 「인구주택총조사」

붙임2
지역별 1인가구의 연령대 분포(20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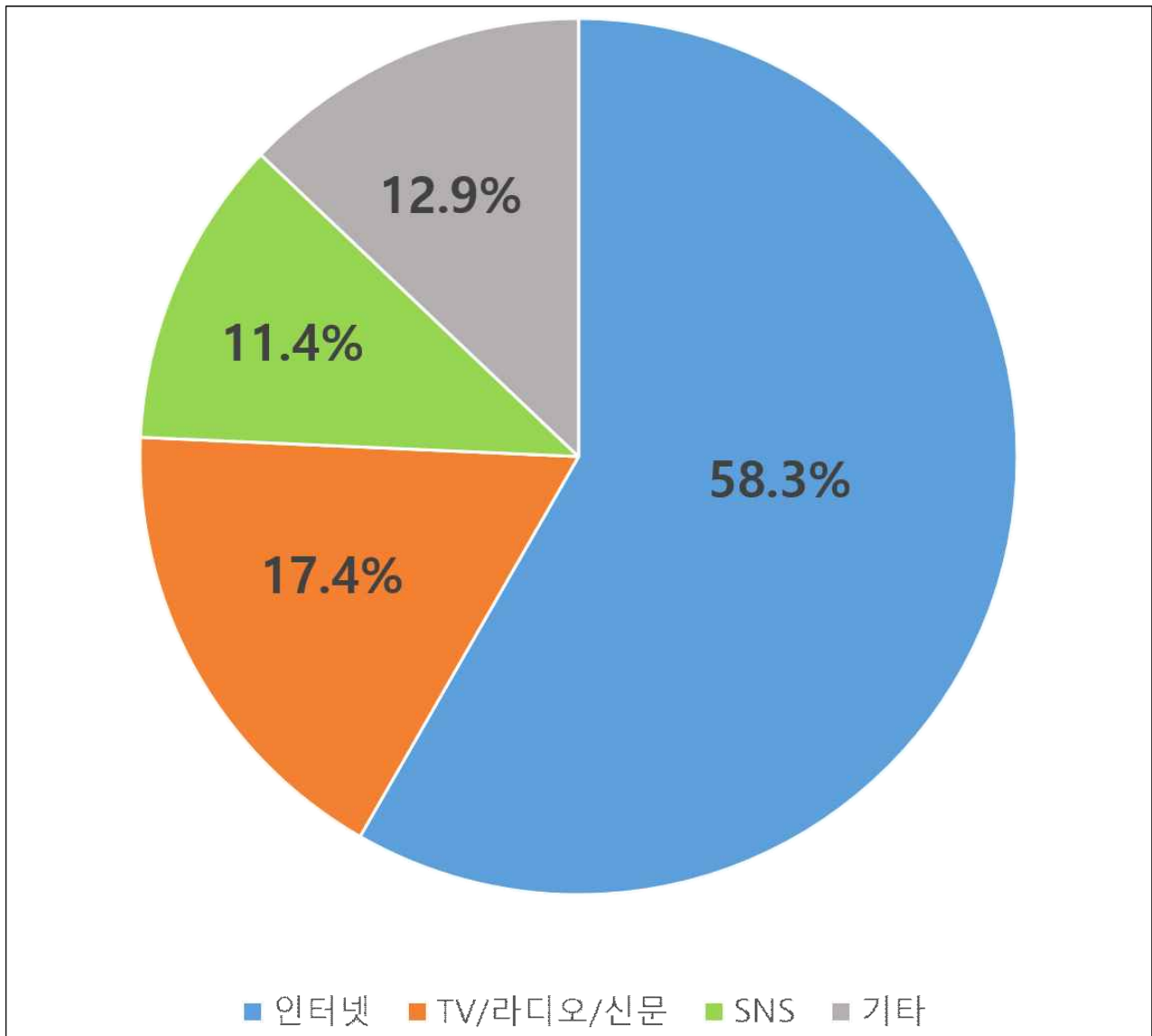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	계	20세 미만	20세 ~ 29세	30세 ~ 39세	40세 ~ 49세	50세 ~ 59세	60세 ~ 69세	70세 ~ 79세	80세 이상
계	100.0	1.1	19.1	16.8	13.6	15.6	15.7	11.0	7.1
서울	100.0	1.0	26.1	22.3	13.1	12.1	12.3	8.6	4.5
부산	100.0	1.1	18.3	13.5	11.7	15.3	19.3	13.8	7.0
대구	100.0	0.9	17.5	14.3	13.1	17.2	17.7	12.1	7.2
인천	100.0	0.8	15.8	16.7	15.5	17.9	16.8	10.5	6.0
광주	100.0	1.4	21.3	17.3	14.6	15.6	14.1	10.0	5.7
대전	100.0	3.4	29.7	16.4	11.8	13.3	12.8	8.0	4.6
울산	100.0	0.5	14.4	17.0	16.4	19.0	18.1	9.9	4.7
세종	100.0	3.1	30.9	21.4	14.0	12.3	9.2	5.5	3.6
경기	100.0	0.6	16.9	19.4	16.3	17.0	15.1	9.4	5.3
강원	100.0	2.2	17.4	10.9	11.2	17.4	18.6	13.2	9.1
충북	100.0	1.9	20.7	14.0	12.0	16.2	15.8	11.1	8.3
충남	100.0	1.8	18.8	15.1	12.5	15.6	15.1	11.6	9.5
전북	100.0	1.5	16.8	11.3	11.6	15.8	16.6	14.8	11.6
전남	100.0	1.0	11.2	9.9	11.0	16.4	17.6	17.8	15.1
경북	100.0	1.5	15.4	11.8	11.5	16.2	17.8	14.2	11.6
경남	100.0	0.6	11.9	13.2	13.9	18.0	19.0	13.7	9.7
제주	100.0	0.8	13.9	15.3	17.6	20.7	16.0	9.2	6.5

※ 통계청(2020), 「인구주택총조사」

붙임3**광역자치단체별 1인가구 지원 조례 현황**

시·도	조례명
서울	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
부산	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대구	-
인천	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
광주	1인가구 지원 조례
대전	1인가구 지원 조례
울산	1인가구 지원 조례
세종	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경기	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강원	-
충북	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충남	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북	-
전남	1인가구 지원 조례
경북	-
경남	1인가구 지원 조례
제주	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

※ 경북여성정책개발원(2022), 「경북지역 중·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」